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황숙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21년 12월 일
제 출 자 : 황숙희, 전수곤, 김영래
배재만, 구교강, 김성우, 도희재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행정안전부 제17893호, 2022.1.13. 시행)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문 변경 개정(안 제1조)

- 목적 :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40조로 변경

나. 공무원 소속 변경(안 제2조)

-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일의 기준이 되는 성주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의 공무원 소속을 성주군의회 공무원으로 변경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17 ~ 12. 21

5. 관련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를 “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성주군”을 “성주군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	제1조(목적) ----------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----------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(생 략)	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의정활동비는 매월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	②---------- 성주군의회 ----------.

붙임 관련 법령

▣ 지방자치법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	제40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▣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